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70

발의연월일: 2021. 2. 24.

발 의 자:정청래·송갑석·최혜영

임오경 • 박성준 • 장경태

이수진 • 김병욱 • 김승원

강득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운동선수에 대한 폭력·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화 되면서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학교폭력을 저지른 선수에 대한 출전정지 및 국가대표 자격 박탈 조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벌백 계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운동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스포츠윤리센 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나 학교 내에서 학생선수들 간의 폭력에 대해 쉬쉬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이를 인지하거나 조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2021년 2월, 국무회의에서 체육계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이 담긴 국민 체육진흥법(일명 최숙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시행됐지만 이는 주로 지도자와 선수 간의 문제를 규율하는 내용이어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각 교육청 관할 내 학교 운동선수들에 대한 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을 보호하고자함(안 제11조제2항).

법률 제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학교운동경기부 소속일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생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2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	
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	
고를 요구할 수 있다. <u><후단</u>	<u>다만, 피해</u>
<u>신설></u>	자 또는 가해자가 학교운동경
	기부 소속일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③ ~ ⑫ (생 략)	③ ~ ① (현행과 같음)